

MINISTRY OF ENVIRONMENT

배출권거래법령 관련 고시 [할당·시장]

202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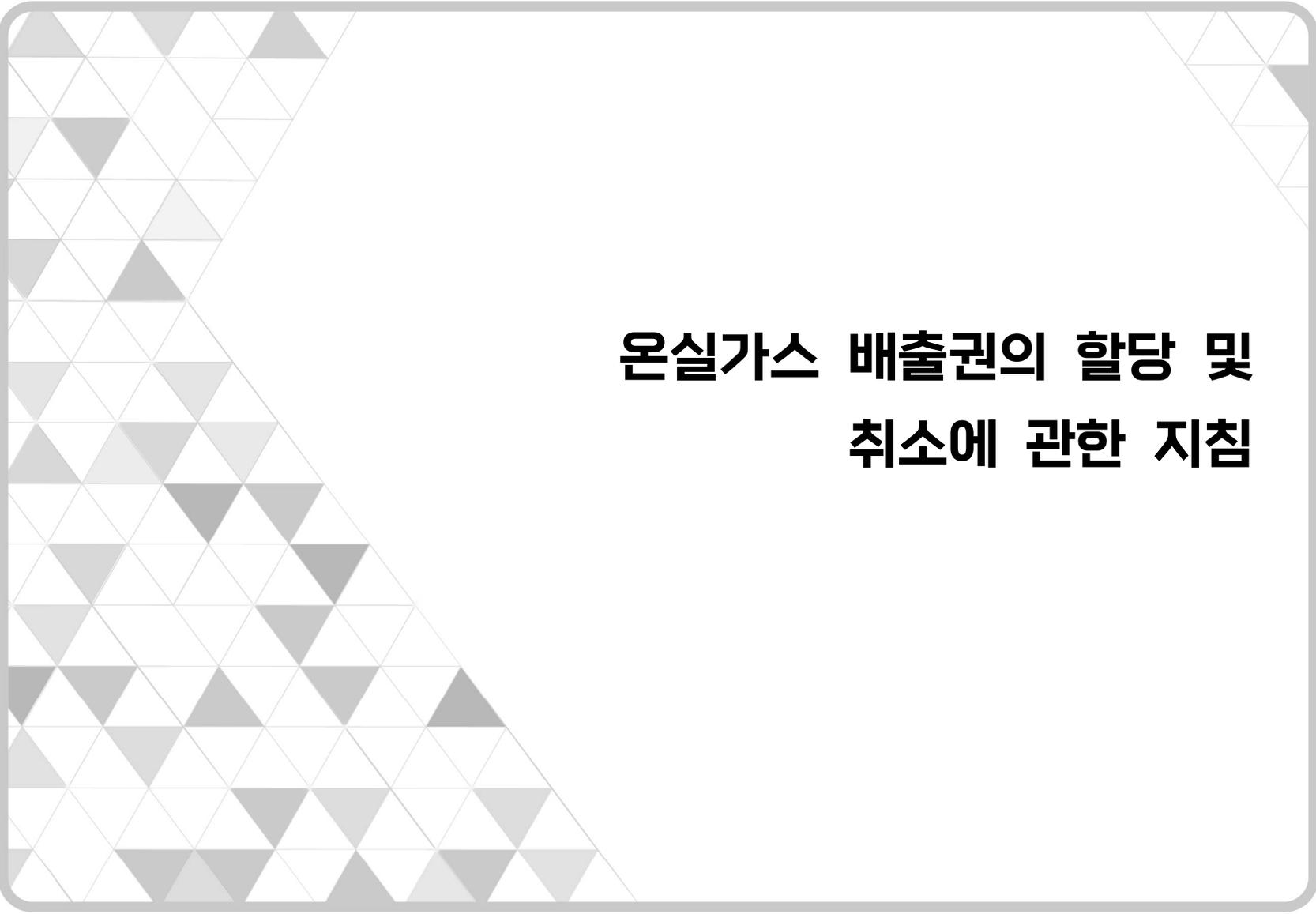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전체목차

배출권거래법령 관련 고시 [할당·시장]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1
2.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59
3.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69
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79
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89
6.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97
7.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10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
제2조(정의)	5

제2장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제3조(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 등)	7
제4조(자발적 참여신청 등)	9
제5조(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9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10

제3장 배출권 할당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제7조(할당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	11
제8조(할당신청서의 접수)	15
제9조(할당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	15

제4장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10조(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의 작성)	15
제11조(배출효율계수의 개발)	18
제12조(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18
제13조(업체별 할당량의 결정 등)	19

제5장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 및 신청서의 접수·심사

제14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19
제15조(신청에 의한 추가 할당 사유)	20
제16조(추가 할당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	22
제17조(추가 할당 신청서의 접수)	25
제18조(추가 할당 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	25

제6장 배출권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19조(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25
제20조(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등)	27

제7장 배출권 할당 취소의 사유

제21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 취소)	27
제22조(할당 취소의 사유)	28
제23조(할당 취소 사유인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의 기준)	28
제24조(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의 기준)	28
제25조(할당 취소 사유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의 기준)	29
제26조(할당 취소 사유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의 기준)	29
제27조(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	29
제28조(할당 취소 사유의 적절성 검토 등)	29

제8장 배출권 할당 취소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29조(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의 작성)	30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제10조 및 제12조 관련)	34
제30조(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결정 등)	31	[별표 2] 업체별 추가 할당량 산정방법(제19조 관련)	44
제31조(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이전)	31	[별표 3] 업체별 할당 취소량 산정방법(제29조 관련)	52

제9장 보칙

제32조(실태조사)	32
제3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32
제34조(비밀준수)	33
제35조(자료제출 요청)	33
제36조(업무의 위탁)	33
제37조(재검토기한)	33
제38조(규제의 재검토)	33
부칙	3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1-277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의 접수 및 심사 절차, 법 제16조 및 영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그리고 법 제17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동실적"이란 부하율, 가동시간, 가동일수,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등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말한다.
2. "결정시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접수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작성한 업체별 할당량의 시안을 말한다.
3. "결정안"이란 환경부장관이 영 제23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안(案)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할당계획 및 제12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한 안
 - 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을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산정안
 - 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접수한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19조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산정안
 - 라. 제21조제1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을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산정안
 - 마.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접수한 할당 취소 사유 통보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 및 제29조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산정안
4.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또는 처리공정에서 원료의 물리적·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5. "기존사업장"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까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을 말한다.
 6. "기존시설"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까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을 말한다.

7.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8. "명세서"란 할당대상업체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제출한 명세서와 법 제24조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를 말한다.
9.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서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원료·전기·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0. "배출시설의 가동개시"는 신설·증설, 또는 재가동된 배출시설에 연료 또는 원료가 투입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11. "변동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의 신설·증설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12. "변동시설"이란 기존시설 중에서 신설·증설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배출시설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14. "사업장의 가동개시"란 사업장 내 신설·증설 등 물리적으로 변동된 배출시설이 가동개시 된 시점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개시라 말한다. 다만, 신설 사업장 내 신설시설이 다수 존재할 경우 신설시설들의

- 가동개시 중 가장 빠른 시점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개시로 본다.
15. "신설 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과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하고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6. "신설 시설"이란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과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하고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배출시설을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가 배출시설을 개조하여 원료 또는 연료가 변경됨에 따라「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량 인증 지침"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구분이 달라지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개조 전의 배출시설이 폐쇄되고 개조 이후의 배출시설이 신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7. "업종"이란 할당대상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에너지 소비활동, 온실가스 배출활동 등을 바탕으로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에서 할당대상업체들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분류를 말한다.
18. "업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19. "연계설비"란 업체 내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20. "계약발전"이란 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연료계약·송전계약 등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사항(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전기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지시를 받아 발전한 경우를 말한다.
21. "증설 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신설·증설 등 생산할

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배출시설들의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보다 증가된 사업장을 말한다.

22. "증설 시설"이란 기존사업장 내 해당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기존시설의 변경 전에 대비하여 변경 후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23. "지속가동"이란 기준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의 기존사업장 또는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이 신설·증설이나 폐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기간 전에 신설된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이 기준기간 중 가동을 정지하였다가 재가동하거나, 기준기간 전에 가동을 정지하였다가 기준기간 중 재가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4. "최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이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가장 최신이고 효율적인 기술 및 활동을 말한다.
25. "폐쇄"란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서 제거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경우를 말한다.
26. "할당계수"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간 형평성 등을 위하여 부문 또는 업종 내의 일부 배출활동에 대해 할당량을 차등 인정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계수를 말한다.
27. "배출효율기준 활동자료량"이란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 적용을 위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제품생산량, 중간제품 생산량, 원료 소비량, 에너지사용량, 처리량 및 용역량 등을 말한다.

제2장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제3조(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이미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시점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로서 매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이상 보유한 업체
2.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 중 해당 업체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로서 기준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이상 보유한 업체
3. 제1호에서 제2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직전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법 제42조제6항의 관리업체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포함한다) 중 다음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다만, 자발적 참여업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한다.
 - 가.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 중 기본법 제42조제9항 전단에 따른 해당 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미 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업체의 명세서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다.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당 업체의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직전 계획기간 당시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제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계획기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5.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및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하며, 이 경우 "기준기간"은 "해당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으로 본다)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 내 모든 사업장을 배출권 할당 대상사업장(이하 "할당대상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2.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3.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양수·임차 등으로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할당대상업체와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고,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이전받은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의 경우

5.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양수·임차 등으로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의 경우

6. 제6조제1항 전단 중 합병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을 지정할 경우 해당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 지정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의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이미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경계 확인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그 기간 내에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을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제1항 단서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할 때에 해당 업체가 자발적 참여업체인 경우에는 다음 계획기간에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자발적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포기신청서(이하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에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이하 "업체별 계정"이라 한다) 등을 등록·수정하고, 업체별 계정 간의 배출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자발적 참여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신청서(이하 "자발적 참여신청서"라 한다)를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다음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업체(해당 업체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완료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별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제5조(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가 폐업신고,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권리와 능력을 상실하여 할당대상업체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후단 및 제2호후단, 제5호에 따라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일부 배출시설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자발적 참여업체로 지정된 할당대상업체 중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4. 법인의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체가 더 이상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의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취소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명세서는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로 보며 관리업체로 지정된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할당대상업체가 합병·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임대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 이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 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속하게 되는 해당 업체에게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기본법과 기본법 시행령, 법과 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양수·임차 등으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이후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온실가스 배출량(이전받은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에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기본법 제42조제6항의 관리업체 지정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연도에 이미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업체의 간접배출의 원인이 되는 다른 업체의 전기 또는 열을 공급하는 사업장 또는 시설을 합병·양수·임차 등으로 이전받아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의 직접배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서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한 간접배출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내 해당 사업장의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이전받은 이행연도부터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까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 할당량 중 간접배출에 해당하는 배출권 할당량은 철회 처리 하여 기타용도 예비분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배출권 할당량 철회 처리 절차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 절차를 준용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 승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는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업체 및 승계 받은 업체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2의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법 제8조1항 및 제9조1항에 따른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 승계에 관한 사실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할당대상업체의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의 권리와 의무 승계와 관련된 할당업체 간 이전(다만,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출권에 대해 할당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이전 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와 의무 승계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배출권의 이전 또는 취소가 결정된 즉시 관계된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 이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이전 결과 통보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배출권 할당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제7조(할당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 ① 할당신청서는 할당대상업체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 제20조에 따른 사업장 단위 및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단위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 할당대상업체의 총괄 정보 및 업종 구분
2.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가.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다만,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준기간 중 자연재해, 화재, 노후화로 인한 시설교체 등으로 인해 현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현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자연재해, 화재, 노후화로 인한 시설교체 등이 원인이 되어 해당 사업장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고, 해당 사업장 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배출시설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이 해당 사업장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발생하여 제1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별도의 산정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업체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 내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별 온실가스 배출 정보

다. 기준기간 내 신설·증설 사업장 등 변동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이 경우 증설 사업장은 제2조제21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 내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배출시설들의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전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원인이 되어 기존사업장의 변동 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동 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고, 기존사업장 내 변동시설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이 변동 전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이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일부나 다수 배출시설 또는 다수 배출시설의 일부에 대해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내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을 적용받는 최소 단위를 하나의 사업장이자 하나의 시설로 간주하며, 기존사업장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전에 대비하여 기존사업장의 설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고,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

라. 기준기간 내 신설·증설 시설 등 변동사업장 내 변동시설 또는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 정보 이 경우 증설 시설에는 제2조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 내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에 연계설비가 물리적으로 추가되거나 변경(연계설비의 설비용량이 변경 전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되어 해당 연계설비에서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의 사용량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해당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기존시설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

3.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에서「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도의정서」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배출시설 중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정보, 해당 시설 또는 활동의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4.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정보

가.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계획기간 중 해당 업체의 배출시설에 제4항제1호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가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라도 감축실적이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 중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발생 연도를 도입 연도로 간주한다)하여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42조제6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에 발생한 감축실적.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이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은 제외한다.

나.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계획기간 중 해당 업체가 제4항제1호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가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라도 감축실적이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 중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발생 연도를 도입 연도로 간주한다)하여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42조제6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에 해당업체의 외부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다음 각 경우

- 1) 다른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한 경우
- 2)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한 경우
- 3) 그 밖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경우

다. 직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해당 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42조제6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이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기간 내 변동사업장 및 변동시설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가동개시일
2. 사업장 내 신설·증설 시설의 가동개시일
3. 사업장 내 증설 시설의 증설 전후의 설계용량
4. 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5. 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

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제4호에 따른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신설·증설 사업장이 신설·증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증설 사업장이 신설·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6.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은 제외한다)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해당 사업장이 신설되거나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라 연계설비의 증설에 따른 기존시설의 증설로 기존사업장을 증설 사업장으로 보는 것과 관련된 증빙자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일 또는 변경일,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이후 가동개시일
2.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전후를 구분한 기준기간(연계시설

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이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직전 연도,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를 포함한다) 내 연도별 해당 기존시설의 전체 연계설비 내역

3. 해당 연계설비의 물리적 변경 전후의 설계용량(연계설비가 물리적으로 변경되어 해당 기존시설을 증설 시설로 보는 경우에 한한다)
 4. 해당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기존시설에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기준기간(연계시설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이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내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5. 제2항제4호부터 같은 항 제6호까지에 따른 해당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 ④ 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1. 해당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적용된 방법론(이 경우 청정개발체제 사업,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외부사업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 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의 방법론에 한한다)
 2. 해당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에 대한 증빙자료
 3. 해당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최초로 감축실적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증빙자료

4.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감축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5.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이 제4조제2항에 따른 할당대상사업장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에 도입된 것에 대한 증빙자료
-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정보와 해당 시설 또는 활동의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제4항 각 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경우 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은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⑥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할당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⑦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내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할당신청서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활동과 그 외 시설 또는 활동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증빙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⑧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할당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할당신청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할당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에 대해서는 제1항(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5항의 내용 중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부분은 제외한다)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의 "온실가스 배출"은 "활동자료"로 보고, 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3항제4호 및 제5호, 제5항(제5항의 내용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부분은 제외한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량"으로 보며, 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⑨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8항에 따른 할당신청서가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를 사업장 단위로 본다.

⑩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에서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사업장의 증설(제1항제2호라목 후단 따라 해당 기존시설을 증설 시설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비용량과 활동자료량 모두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자료량만을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의 증설은 기존사업장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전에 대비하여 기존사업장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⑪ 제1항제4호다목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감축실적으로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할당신청서의 접수) 할당대상업체는 제7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를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 지정된 업체는 매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이하 "신청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사실

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할당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할당신청서의 중복, 누락, 오류 등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신청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절성 검토를 통하여 할당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5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하기 위하여 신청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식 또는 문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의 양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10조(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할당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기준기간 기존사업장의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가. 기준기간의 지속가동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기준기간 중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이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나.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이 신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다. 기준기간 내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모든 신설시설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라.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증설 사업장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마. 기준기간 내 마지막 연도에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모든 기존시설 및 변동시설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바. 기준기간의 폐쇄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산정
 - 사. 기준기간 내 기존시설에 적용되는 목표관리지침 또는 배출량 인증 지침의 국가 고유 배출계수(이하 "국가 고유 배출계수"라 한다)가 기준기간 중 변경되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가 변경 적용 전의 명세서를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변경 적용된 국가 고유 배출계수에 따라 환산하여 해당 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변경 적용된 국가 고유 배출계수에 따라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이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변경 적용된 연도에 신설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 내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에 대해서는 할당계수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른 증빙자료가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해서는 할당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의 기존사업장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사업장로 본다.
1. 기존사업장이 폐쇄되어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는 사업장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해당 업체가 기준기간에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해당 업체가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법 제42조제6항의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에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을 포함한다)을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계획기간의 이행연도수로 나눈 값.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초과배출량에서 제외한다.

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 시 고려된 실적 (이 경우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의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 외부사업 지침 제8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외부감축실적 승인 시 고려된 실적

다. 종전 계획기간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 고려된 실적(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의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2.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3. 기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업체가 기준기간에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법 제42조제6항의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에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을 포함한다)을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계획기간의 이행연도수로 나눈 값.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초과감축량에서 제외한다.
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 시 포함된 실적 (이 경우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의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 외부사업 지침 제8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외부감축실적 승인 시 포함된 실적

다. 종전 계획기간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 포함된 실적(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의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축실적 중 환경부장관이 제7조제4항 각 호 및 제11항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한 실적을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계획기간의 기준기간수로 나눈 값

3. 기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이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1항제1호 사목 및 아목,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항제2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장의 단위 활동자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효율계수(이하 "배출효율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으로 본다.

⑦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해 제6항에 따라 작성된 배출효율기준방식의 이행연도

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사업장(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포함되는 명세서의 배출시설에 한한다)에 대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1항제1호 사목 및 아목,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둘 중 값이 큰 방식으로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업체는 해당 계획기간 중 배출량 인증 지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일련번호, 공정, 생산품 및 생산량, 연료명 및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등을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부합하도록 명세서에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효율계수의 개발)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자료로서 해당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주요 제품 생산량을 활용하고, 이 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동자료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집 또는 산정되고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증기관 등 제3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중간제품 생산량
 2. 해당 사업장의 원료 소비량
 3. 해당 사업장의 연료 소비량 또는 에너지 생산량
 4. 기타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운항 실적(ton-km), 연면적(m²), 처리량 등]
-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명세서에서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명세서에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검증기관 등 제3자의 검증을 받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적가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실적과 성능 등을 조사 및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2.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특정국가 단위에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제12조(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이 할당계획 및 제10조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2.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부문별 또는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해당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한 모든 업체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으로 나눈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별 구분은 온실가스 배출량기준 사업장과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구분을 고려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각 부문 및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

(이 경우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제출한 기준기간의 명세서를 활용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업체별 할당량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할당량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0조에 따른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제30조에 따른 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결정, 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을 이유로 해당 계획기간 중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장 단위로 배출

권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5장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 및 신청서의 접수·심사

제14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계획기간 중 변경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별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할당 할 수 있다(이 경우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신규진입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있는 경우 그 업체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을 반영하여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하는 것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 작성 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및 법 제5조제1항1호에 따른 부문·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이행연도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각 이행연도의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량 통보 양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신청에 의한 추가 할당 사유) ① 법 제16조 및 영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의 추가 할당(이하 "추가 할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이 경우 신설·증설 사업장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기준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이 물리적 변경이 없더라도 신설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본다.

나. 폐쇄 등의 사유로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본다.

다. 폐쇄 등의 사유로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다른 업체의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합병·임차(이 경우 양수·합병·임차는 할당대상업체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업체(이하 "비할당대상업체"라 한다)간의 양수·합병·임차를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 등으로 이전받아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본다.

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됨으로써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 또는 시설(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기 전에 보유하는 사업장 또는 시설에 한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본다.

마.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연계설비가 물리적으로 추가되거나 변경(연계설비의 설계용량이 변경 전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해당 연계설비에서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의 사용량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존시설도 증설 시설로 본다.

바. 제2조제22호에도 불구하고 기준기간 중 신설 시설이 해당 이행연도에 가동률이 증가하여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설 시설도 증설 시설로 본다. 이 경우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시설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 한한다.)

2.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제약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약발전(이 경우 제약발전은 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하고,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제약발전량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되어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발전시설의 이행연도 발전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평균을 말한다) 발전량보다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 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이 경우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따라 열 공급량이 증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준수함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집단에너지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보다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4. 「항공안전법」제77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5.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

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물환경보전법」제4조의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6.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 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이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7.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可燃性) 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이 경우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

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여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② 제1항의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은 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하며,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을 제외하여 고려하고,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해당 업체에 제7조제1항4호가목 및 다목의 감축 유형을 도입하여 감축한 실적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③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용량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자료량을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의 증설은 기존사업장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전에 대비하여 기존사업장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 따른 증설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 중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④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추가 할당 신청사유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추가 할당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 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서(이하 "추가 할당 신청서"라 한다)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1.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2.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할당량과 제1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수량
3.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해당 업체의 배출시설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계획기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중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이 경우 증빙자료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하고, 해당 감축실적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4.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 및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사업장 허가 서류, 시설 허가 서류 또는 구매계약서, 설비 증설 공사 서류,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양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정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할당대상업체가 됨으로써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을 받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 및 시설의 정보 등 사업장 신설 및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에 관한 정보(이 경우 기준기간 중 신설 시설의 가동개시일 정보와 기준기간의 명세서에서 제외되거나 폐쇄되어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명세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 그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장 내 기존시설 및 증설 시설의 설계용량(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활동의 감축효율 등 할당계수 미적용을 위한 관련 정보,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 사업장 및 사업장 내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양수 또는 합병된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할당대상 업체가 됨으로써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을 받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5.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 중 제15조제1항제1호의 연계설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정보와 증빙자료가 추가되어야 한다.

가.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일 또는 변경일,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이후 가동개시일

나.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전후를 구분한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연계시설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및 계획기간 중 이행연도별 해당 기존시설의 전체 연계설비 내역

다. 해당 연계설비의 물리적 변경 전후의 설계용량(연계설비가 물리적으로 변경되어 해당 기존시설을 증설 시설로 보는 경우에 한한다)

라.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

마. 해당 기존시설의 기준기간(해당 기존사업장에 대해 제10조제1항 나목부터 마목까지 각 목의 단서에 따라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된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해당 3개월 이상의 기간을 포함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 다만, 해당 기존시설이 속한 기존사업장이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이거나, 마지막 연도 증설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존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6.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연간 제약발전량,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7.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공급 의무에 따른 열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관계기관의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한 열 공급량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자신의 집단에너지 사업장 간 열 공급에 관한 정보,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의 열 공급에 관한 정보, 사업장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에 관한 정보,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집단에너지 설비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연간 열 생산량과 전기 생산량,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설비별 열 및 전기의 생산효율 등

8.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추가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항공기 운항기술 수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기종별 추가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운항횟수 및 운항실적(ton-km) 정보 등

9. 관련 법령에 의해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기준기간 및 이행연도 방류수 수질 기준에 관한 정보,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등이 단위기간별 최종방류구 별 할당된 오염부하량에 관한 정보,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등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관련 서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사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

10.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에 관한 정보,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운행·운송 실적 정보 등

11.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해당 업체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에 해당 업체 내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별로 활용한 가연성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배출시설의 정보(허가증 등) 등

12.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감축실적으로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② 제1항제3호(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제5호 라목 및 마목, 제10호의 증빙자료에는 검증기관

의 검증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증빙자료에는 해당 추가 할당 사유의 발생 전후를 비교한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경우 증빙자료의 양식은 별지 제15호 서식 및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추가 할당 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5호 및 제7호까지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서에는 해당 이행연도의 활동자료 증가량과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기관 등 제3자의 검증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제1항제5호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존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활동자료량
2. 해당 기존사업장의 기준기간(해당 기존사업장에 대해 제10조제1항 나목부터 마목까지 각 목의 단서에 따라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한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해당 3개월 이상의 기간을 포함한다) 활동자료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활동자료량
3. 해당 기존사업장이 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이거나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로 인한 증설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존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활동자료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활동자료량

④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추가 할당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추가 할당 신청서의 접수)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보다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의 제14조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한다.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의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 후의 이행연도에 대하여 해당 사유로 추가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경우 추가 할당 신청서 양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추가 할당 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추가 할당 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의 검토, 보완 요청 등에 관한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6장 배출권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19조(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가 할당 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바탕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1.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유 중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신설된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2.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유 중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신설 시설을 포함한다)·증설(제15조제1항제1호 마목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으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증설 사업장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 고려된 해당 변동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 중 적은 값. 이 경우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라 증설 시설로 보는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부분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 중 적은 값으로 본다.

3. 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과 기준기간 연평균 제약발전량의 차이에 해당 발전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곱한 값
4.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의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의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의 차이

5.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업체의 항공기 운항기술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업체의 항공기 운항기술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6.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업체의 방류수 수질 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으로 발생한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과 해당 업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의 차이
 7.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8. 제15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업체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업체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 내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에 대해서는 할당계수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시설

의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가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해서는 할당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 및 제4호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기간 연평균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보며, 제3호의 "해당 발전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배출효율계수"로 본다. 또한 같은 항 제1호의 사유 중 사업장의 신설로 인한 시운전·성능테스트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되었지만 활동자료량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자료발생 시점을 가동개시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 발생시점 이전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활동자료 발생시점 이후는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구분하여 더한 값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또는 시설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중복 해당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 중에서 큰 값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할 수 있다(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동일 사업장 또는 시설에서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으로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⑦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턴 5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에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이하 "예비분 계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배출량을 인정한 경우 해당 이행

연도 배출량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정정할 수 있다.

제7장 배출권 할당 취소의 사유

제21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계획기간 중 할당계획 변경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별로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할당 취소 할 수 있다(이 경우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신규진입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있는 경우 그 업체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을 반영하여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감소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할당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당 취소 하는 것으로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 작성 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및 법 제5조제1항1호에 따른 부문·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이행연도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각 이행연도의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 취소량 통보 양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업종의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해당 배출권등록부에서 소멸 처리 한다.

제22조(할당 취소의 사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의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3. 할당대상업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23조(할당 취소 사유인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의 기준) 제22조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상법」 제228조에 따라 법원에 해산등기를 제출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해산 사유의 발생에 따른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세무서장에 게(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체 또는 일부사업장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4. 할당대상업체가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전체 또는 일부사업장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
5.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의 할당을 받은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6.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임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비할당대상업체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된 경우

제24조(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의 기준) ① 제22조제2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 내 배출시설을 가동중지·정지·폐쇄(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란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가동중지·정지·폐쇄, 가동실적 감소 등으로 인한 할당 취소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제25조(할당 취소 사유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의 기준) 제22조제3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 받은 경우란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신청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6조(할당 취소 사유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의 기준) 법 제8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의 기준이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가 폐업,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존속이유를 잃어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이 다른 업체로 이전되어 더 이상 법 제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자발적 참여업체 중 영 제9조4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4. 법인의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체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존속할 수 없게 되어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제27조(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의 발생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할당 취소 사유에 대한 통보서(이하 "취소 사유 통보서"라 한다)와 증빙자료(제2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제23조 및 제2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거나 해당 업체의 조직경계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였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전(移轉)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장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내역 등(이 경우에는 최초 사유 발생을 통보한 후에도 해당 계획기간의 때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마다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사유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할당 취소 사유의 적절성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취소 사유 통보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의 검토, 보완 요청 등의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8장 배출권 할당 취소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29조(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소 사유 통보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및 해당 계획기간에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 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이하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라 한다)에 대한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21호서식의 할당 취소 사전통지서를 통해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 다만,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가동정지일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생산 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별표 1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이와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에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다.

2. 제24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해당 업체가 검증을 받은 배출량을 증빙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이행연도별 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 이 경우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다만,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을 이전해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생산을 이전해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한다)에 생산 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을 더한 값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다.

3. 제25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

4. 제26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가.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폐업신고,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

나. 제26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분할 또는 양도로 다른 업체로 이전된 해당 사업장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

다. 제26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

라. 제26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계획기간 중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지 못한 할당대상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

② 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전단의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또한 제1호 및 제2호 후단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을 산정한다.

④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 해당하는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보고된 취소 사유 통보서가 없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유에 대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 취소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배출량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정정할 수 있다.

제31조(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이전)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3조 및 제2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별 계정으로부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배출권의 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법 제19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 및 법 제27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배출권보다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해당 계획기간 중 다른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 배출권을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배출권보다 해당 업체별 계정에 남아 있는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12항에 따라 명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부족한 배출권을 자신의 거래 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9장 보칙

제32조(실태조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배출권 할당의 신청
2.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배출권의 추가 할당
3.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3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① 환경부장관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1.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통보한 날
2. 제6조제4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실을 통보한 날
3. 제13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날
4. 제14조제6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추가 할당량을 통보한 날
5. 제20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추가 할당량을 통보한 날
6. 제21조제6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을 통보한 날
7. 제30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을 통보한 날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양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준수) 이 지침에 의해 정보를 취득한 자는 영 제15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자료제출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를 위하여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원활하게 배출권을 할당 및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할당대상업체가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알기 위하여 전력 및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영 제5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와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 등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검토
2. 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검토
3. 제11조에 따른 배출효율계수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검토

제37조(재검토키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70호, 2020.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1-277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차 계획기간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에 포함되는 감축실적은 제7조제1항제4호,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제10조 및 제12조 관련)

해당 이행연도의 업체별 할당량(F_i)은 ① 배출량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②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③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과 ④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더하고, ⑤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을 차감하고, ⑥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포함 또는 제외하도록 한 사항과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반영한 후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업체별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F_i = (EE_{CF} + EE_{BM} + HE_{extra_red,mean} + EE_{red,mean} + EE_{etc_red,mean} - HE_{extra_emi,mean} - EE_{etc_emi,mean}) \times AF$$

- F_i : 업체(i)의 계획기간 내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 EE_{CF} : 업체(i)의 배출량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EE_{BM} : 업체(i)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HE_{extra_red,mean}$: 업체(i)가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tCO₂-eq)
- $EE_{red,mean}$: 업체(i)가 할당대상업체로서 해당 업체의 배출시설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tCO₂-eq)

- $EE_{etc_red,mean}$: 업체(i)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 $HE_{extra_emi,mean}$: 업체(i)가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tCO₂-eq)
- $EE_{etc_emi,mean}$: 할당계획에서 정한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배출 시설 또는 별도의 배출활동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등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제외하도록 한 사항,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각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 \leq 1.0$)

※ 업체의 계획기간 내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배출량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존사업장 중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E_{CF})은 ①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②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③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④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⑤ 기준기간 내 기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EE_{CF} = \sum_k EE_{con,k} + \sum_o EE_{new,o} + \sum_r EE_{ext,r} + \sum_u EE_{do,u} + \sum_v EE_{etc,v}$$

- EE_{CF} : 배출량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 중 기존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EE_{con,k}$: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EE_{new,o}$: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EE_{ext,r}$: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EE_{do,u}$: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u)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EE_{etc,v}$: 기준기간 내 기타 사업장(v)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①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EE_{com,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EE_{base-com,k}$) 값으로 산정한다.

$$EE_{com,k} = \frac{HE_{k,b1} + HE_{k,b2} + HE_{k,b3}}{3}$$

- $EE_{com,k}$: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HE_{k,b1}$: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b1)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HE_{k,b2}$: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HE_{k,b3}$: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다만, 기준기간 중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로에 따른 교체 등이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가. 기존사업장의 기준기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존사업장(지속가동·신설·증설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다) 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을 제외한 기존시설(지속가동·신

설·증설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들의 기준기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HE_{l,b_n})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지속가동·신설·증설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의 기준기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HE_{m,b_n})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HE_{k,b_n} = \sum_l HE_{l,b_n} + \sum_m (HE_{m,b_n} \times AAF)$$

- HE_{k,b_n} : 기존사업장(k)의 기준기간 n번째 연도(bn)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HE_{l,b_n} : 기존사업장(k) 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을 제외한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n번째 연도(bn)의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HE_{m,b_n} : 기존사업장(k) 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기준기간 n번째 연도(bn)의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AAF :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할당량을 차등 인정할 수 있는 할당계획에 명시된 계수(할당계수)

※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신설 또는 증설 사업장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 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을 제외한 기존시설(지속가동·신설·증설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들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사업장 내 할당계획에서 정한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지속가동·신설·증설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른 증빙자료가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해서는 할당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EE_{new,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이 신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신설 사업장이 도입된 경우

$$EE_{new,o} = \frac{HE_{o,b2} + HE_{o,b3}}{2}$$

$EE_{new,o}$: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HE_{o,b2}$: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HE_{o,b3}$: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다만,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에 신설 사업장이 도입된 경우

$$EE_{new,o} = HE_{o,b3}$$

$EE_{new,o}$: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HE_{o,b3}$: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에 신설 사업장이 도입된 경우

$$EE_{new,o} = ME_{mean,o} \times 12$$

$EE_{new,o}$: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ME_{mean,o}$: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month)
 ※ 신설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별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해당 사업장의 모든 신설 시설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사업장이 신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 ($EE_{ext,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경우

$$EE_{ext,r} = \frac{HE_{r,b2} + HE_{r,b3}}{2}$$

$EE_{ext,r}$: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HE_{r,b2}$: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HE_{r,b3}$: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다만,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에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경우

$$EE_{ext,r} = HE_{r,b3}$$

$EE_{ext,r}$: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HE_{r,b3}$: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에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경우

$$EE_{ext,r} = ME_{mean,r} \times 12$$

$EE_{ext,r}$: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ME_{mean,r}$: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month)

※ 증설 사업장 내 기존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배출량을 월로 환산한 값으로, 변동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별 변동 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 및 변동시설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사업장이 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0으로 산정한다.

⑤ 기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가. 기준기간 3년간의 명세서 중 일부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기간 3년간의 명세서 중 첫 번째 연도 또는 두 번째 연도의 배출량이 없는 사업장이나, 기준기간의 첫 번째 연도에 신설 또는 해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기간 3년간의 명세서 중 두 번째 연도의 배출량이 없는 사업장은 활용 가능한 2개 연도 또는 단(單) 연도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하여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에도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에는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②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존사업장 중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E_{BM})은 ①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②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③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④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⑤ 기준기간 내 기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다만,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장 경우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사업장(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포함되는 명세서의 배출시설에 한한다)에 대해 배출량기준방식(제10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아목, 제4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둘 중 값이 큰 방식으로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EE_{BM} = \sum_k EE_{BM.con,k} + \sum_o EE_{BM.new,o} + \sum_r EE_{BM.ext,r} + \sum_u EE_{BM.do,u} + \sum_v EE_{BM.etc,v}$$

- EE_{BM}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 기존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EE_{BM.con,k}$: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EE_{BM.new,o}$: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EE_{BM.ext,r}$: 기준기간 내 해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EE_{BM.do,u}$: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u)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EE_{BM.etc,v}$: 기준기간 내 기타 사업장(v)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①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EE_{BM.con,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연평균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EE_{BM.con,k} = \frac{HAL_{k,b1} + HAL_{k,b2} + HAL_{k,b3}}{3} \times BM_k$$

$EE_{BM.con,k}$: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HAL_{k,b1}$: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b1)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HAL_{k,b2}$: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HAL_{k,b3}$: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BM_k :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에 적용된 배출효율 계수(tCO₂-eq/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기간 중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이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의 활동자료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준기간 연평균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②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EE_{BM.new,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이 신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가.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신설 사업장이 도입된 경우

$$EE_{BM_{new,o}} = \frac{HAL_{o,b2} + HAL_{o,b3}}{2} \times BM_o$$

$EE_{BM_{new,o}}$: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₂-eq)

$HAL_{o,b2}$: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활동자료량 (활동자료 단위)

$HAL_{o,b3}$: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활동자료량 (활동자료 단위)

BM_o : 해당 신설 사업장(o)에 적용된 배출효율계수(tCO₂-eq/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연평균 활동자료량이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연평균 활동자료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활동자료량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에 신설 사업장이 도입된 경우

$$EE_{BM_{new,o}} = HAL_{o,b3} \times BM_o$$

$EE_{BM_{new,o}}$: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₂-eq)

$HAL_{o,b3}$: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활동자료량 (활동자료 단위)

BM_o : 해당 신설 사업장(o)에 적용된 배출효율계수(tCO₂-eq/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활동자료량이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활동자료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활동자료량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에 신설 사업장이 도입된 경우

$$EE_{BM_{new,o}} = MAL_{mean,o} \times 12 \times BM_o$$

$EE_{BM_{new,o}}$: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₂-eq)

$MAL_{mean,o}$: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월평균 활동자료량 (활동자료 단위)

BM_o : 해당 신설 사업장(o)에 적용된 배출효율계수(tCO₂-eq/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이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사업장이 신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사업장이 신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활동자료량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 ($EE_{BM,ext,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가.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해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경우

$$EE_{BM,ext,r} = \frac{HAL_{r,l2} + HAL_{r,l3}}{2} \times BM_r$$

- $EE_{BM,ext,r}$: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HAL_{r,l2}$: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활동자료량 (활동자료 단위)
- $HAL_{r,l3}$: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활동자료량 (활동자료 단위)
- BM_r : 해당 증설 사업장(r)에 적용된 배출효율계수(tCO₂-eq/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연평균 활동자료량이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연평균 활동자료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활동자료량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에 해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경우

$$EE_{BM,ext,r} = HAL_{r,l3} \times BM_r$$

- $EE_{BM,ext,r}$: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HAL_{r,l3}$: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 BM_r : 해당 증설 사업장(r)에 적용된 배출효율계수(tCO₂-eq/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활동자료량이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활동자료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활동자료량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에 해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경우

$$EE_{BM,ext,r} = MAL_{mean,r} \times 12 \times BM_r$$

- $EE_{BM,ext,r}$: 기준기간 내 기준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MAL_{mean,r}$: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월평균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 BM_r : 해당 증설 사업장(r)에 적용된 배출효율계수 (tCO₂-eq/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이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사업장이 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준시설 및 변동시설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준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사업장이 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준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활동자료량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0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신설·증설 사업장 중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신설·증설된 이후 활동자료량은 없지만, 해당 연도의 명세서에 신설·증설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쇄로 간주하지 않는다.

⑤ 기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가. 기준기간 3년간의 활동자료량 중 일부가 없는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기간 3년간의 활동자료량 중 첫 번째 연도 또는 두 번째 연도의 활동자료량이 없는 사업장이나, 기준기간의 첫 번째 연도 신설·증설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기간 3년간의 활동자료량 중 두 번째 연도의 활동자료량이 없는 사업장은 활용 가능한 2개 연도 또는 단(單) 연도 활동자료량을 활용하여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신설·증설 사업장 중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신설·증설된 이후 활동자료량은 없지만, 해당 연도의 명세서에 신설·증설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年)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HE_{extra_red,mean}$)은 해당 업체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목표관리제의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기준기간 동안 배출허용량에 미달한 감축량의 합을 해당 계획기간 내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이행연도의 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기준기간 동안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연도가 있으면 그 초과배출량도 포함하여 산정하되, 산정한 결과 초과감축량이 없거나 초과배출량만 있는 경우에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 다만, 기준기간 동안의 목표관리제 배출허용량에 미달한 감축량을 영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 시 고려한 경우(영 제25조 제3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가 적용되었더라도 해당 초과감축량을 모두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외부사업 지침 제8조 제2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외부감축실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종전 계획기간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 목표관리제의 초과배출량 또는 초과감축량 산정에서 고려한 경우(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정계수가 적용된 경우에도 해당 초과감축량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본다)에는 해당 연도의 실적을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HE_{extra_red,mean} = \frac{HE_{extra_red,b1} + HE_{extra_red,b2} + HE_{extra_red,b3}}{N_{year}}$$

$HE_{extra_red,mean}$: 업체(i)의 관리업체로서 목표관리 배출허용량에 대한 기준기간 초과감축량(tCO₂-eq)

$HE_{extra_red,b1}$: 업체(i)의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b1) 초과감축량(tCO₂-eq)
※ 초과배출시, $HE_{extra_red,b1} < 0$

$HE_{extra_red,b2}$: 업체(i)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초과감축량(tCO₂-eq)
※ 초과배출시, $HE_{extra_red,b2} < 0$

$HE_{extra_red,b3}$: 업체(i)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초과감축량(tCO₂-eq)
※ 초과배출시, $HE_{extra_red,b3} < 0$

N_{year} : 해당 계획기간 내 업체(i)가 적용받는 이행연도 수

※ 기준기간 중 업체가 배출 원단위만으로 목표를 부여받은 연도(b)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값은 산정에서 제외($HE_{extra_red,b} = 0$)한다.

※ 기준기간 중 업체가 배출허용량과 배출 원단위 목표를 모두 부여받은 연도(b)가 있는 경우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감축량($HE_{extra_red,b} > 0$)으로 반영하고,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HE_{extra_red,b} < 0$)으로 반영하며, 두 가지 목표 중 하나만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값을 산정에서 제외($HE_{extra_red,b} = 0$)한다.

※ 기준기간에 관리업체였던 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이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업체에게 기준기간에 관리업체(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목표관리제의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또는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 기준기간에 관리업체였던 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업체 또는 해당 사업장을 양수한 업체(해당 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도 기준기간에 관리업체(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목표관리제의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또는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해당 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비율은 분할 또는 양수한 부분에 대한 초과배출량 또는 초과감축량이 명세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명세서의 구분량에 따르고, 명세서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가 기준기간 중 분할하거나 사업장을 양수한 때에는 분할 또는 양수한 부분의 분할 또는 양수한 연도의 직전 연도 배출량 비중, 해당 업체가 기준기간 후에 분할하거나 사업장을 양수한 때에는 분할 또는 양수한 부분의 기준기간 연평균 배출량 비중에 따른다.

4)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실적($EE_{red,mean}$)은 해당 업체가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제7조제1항제4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계획기간 중 제7조 제4항 제1호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42조 제6항 및 영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에 발생한 감축실적 또는 직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해당 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42조제6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에 활용한 제7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의 합을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 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가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라도 감축실적이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 중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발생 연도를 도입 연도로 간주한다.

※ 다만, 할당대상업체의 제7조제1항제4호가목과 다목에 따른 감축실적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인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에서 발생하거나,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제10조 제7항에 따라 배출효율적용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 명세서의 배출시설에 대해 배출량 기반 적용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EE_{red,mean} = \frac{HE_{red,b1} + HE_{red,b2} + HE_{red,b3}}{N_{year}}$$

- $EE_{red,mean}$: 할당대상업체의 감축 실적(tCO₂-eq)
 $HE_{red,b1}$: 업체(i)의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b1) 감축실적(tCO₂-eq)
 $HE_{red,b2}$: 업체(i)의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감축실적(tCO₂-eq)
 $HE_{red,b3}$: 업체(i)의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감축실적(tCO₂-eq)
 N_{year} :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 수

- ※ 할당대상업체로서 감축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이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업체에게 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 ※ 할당대상업체로서 감축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감축실적을 발생시킨 배출시설이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전받은 업체가 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5]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HE_{extra_emi,mean}$)은 해당 업체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목표관리제의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기준기간 동안 배출허용량을 초과한 배출량의 합을 해당 계획기간 내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이행연도의 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며, ① 및 ②에 따라 산정된 값의 비중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감한다. 이 경우 기준기간 동안 배출허용량을 미달하여 감축한 연도가 있으면 그 초과감축량도 포함하여 산정하되, 산정한 결과 초과배출량이 없거나 초과감축량만 있는 경우에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 다만, 기준기간 동안의 목표관리제 배출허용량을 초과한 배출량을 종전 계획기간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 목표관리제의 초과배출량 또는 초과감축량 산정에서 고려한 경우(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정계수가 적용된 경우에도 해당 초과배출량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본다)에는 해당 연도의 실적을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HE_{extra_emi,mean} = \frac{HE_{extra_emi,b1} + HE_{extra_emi,b2} + HE_{extra_emi,b3}}{N_{year}}$$

- $HE_{extra_emi,mean}$: 업체(i)의 관리업체로서 목표관리 배출허용량에 대한 기준기간 초과배출량(tCO₂-eq)
 $HE_{extra_emi,b1}$: 업체(i)의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b1) 초과배출량(tCO₂-eq)
 ※ 초과감축시, $HE_{extra_emi,b1} < 0$
 $HE_{extra_emi,b2}$: 업체(i)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초과배출량(tCO₂-eq)
 ※ 초과감축시, $HE_{extra_emi,b2} < 0$
 $HE_{extra_emi,b3}$: 업체(i)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초과배출량(tCO₂-eq)
 ※ 초과감축시, $HE_{extra_emi,b3} < 0$
 N_{year} : 해당 계획기간 내 업체(i)가 적용받는 이행연도 수

※ 기준기간 중 업체가 배출 원단위만으로 목표를 부여받은 연도(b)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값은 산정에서 제외($HE_{extra_emi,b} = 0$)한다.

※ 기준기간 중 업체가 배출허용량과 배출 원단위 목표를 모두 부여받은 연도(b)가 있는 경우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감축량($HE_{extra_emi,b} < 0$)으로 반영하고,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HE_{extra_emi,b} > 0$)으로 반영하며, 두 가지 목표 중 하나만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값을 산정에서 제외($HE_{extra_emi,b} = 0$)한다.

※ 기준기간에 관리업체였던 업체(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목표관리제의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이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업체에게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또는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 기준기간에 관리업체였던 업체(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목표관리제의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업체 또는 해당 사업장을 양수한 업체(해당 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도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또는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해당 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비율은 분할 또는 양수한 부분에 대한 초과배출량 또는 초과감축량이 명세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명세서의 구분량에 따르고, 명세서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가 기준기간 중 분할하거나 사업장을 양수한 때에는 분할 또는 양수한 부분의 분할 또는 양수한 연도의 직전 연도 배출량 비중, 해당 업체가 기준기간 후에 분할하거나 사업장을 양수한 때에는 분할 또는 양수한 부분의 기준기간 연평균 배출량 비중에 따른다.

⑥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포함 또는 제외하도록 한 사항과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포함하도록 한 사항,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등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제외하도록 한 사항,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해당 계획기간 내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이행연도의 수로 나눈 값이나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 및 환경부장관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별표2]

업체별 추가할당량 산정방법(제19조 관련)

①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계획기간에 ①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②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의 합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F_{added} = \left(\sum_k IE_{new,k} + \sum_l IE_{ext,l} \right) \times AF$$

F_{added} :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IE_{new,k}$: 신설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₂-eq)

$IE_{ext,l}$: 증설 사업장(l)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₂-eq)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신설 사업장,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을 제외한 시설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 사업장 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IE_{new,k} = \sum_h E_h + \sum_j (E_j \times AAF)$$

- $IE_{new,k}$: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 중 신설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₂-eq)
- E_h : 해당 신설 사업장(k) 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또는 배출활동)(j)을 제외한 시설(또는 배출활동)(h)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E_j : 해당 신설 사업장(k) 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또는 배출활동)(j)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AAF :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할당량을 차등 인정할 수 있는 할당계획에 명시된 계수(할당계수)
 ※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축효율 등과 같은 증빙자료가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해서는 할당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설 사업장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신설 사업장을 포함한다.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IE_{new,k} = NAL_k \times BM_k$$

- $IE_{new,k}$: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신설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₂-eq)
- NAL_k : 해당 신설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 BM_k : 해당 신설 사업장(k)의 배출효율계수(tCO₂-eq/활동자료 단위)

※ 신설 사업장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신설 사업장을 포함한다.
 ※ 다만,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신설 사업장이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은 있지만 활동자료 발생은 없을 경우, 활동자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활동자료 발생 시점 이전은 배출량 기준 방식으로, 활동자료 발생 시점 이후는 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산정한다.

②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증설 사업장 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을 제외한 시설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 사업장 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더한 값을 말한다)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별표 1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값과 해당 사업장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변동시설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을 제외한 시설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변동시설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더한 값을 말한다)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변동시설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 중 적은 값으로 산정한다.

$$IE_{ext,l} = MIN[\sum(E_h + E_j \times AAF) - HE_l, \sum\{(E_n + E_o \times AAF) - HE_p\}]$$

- $IE_{ext,l}$: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 중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l)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₂-eq)
- E_h : 해당 증설 사업장(l) 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또는 배출활동)(j)을 제외한 시설(또는 배출활동)(h)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E_j : 해당 증설 사업장(l) 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또는 배출활동)(j)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HE_l : 해당 증설 사업장(l)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E_n : 해당 증설 사업장(l)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또는 배출활동)(o)을 제외한 변동시설(또는 배출활동)(n)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E_o : 해당 증설 사업장(l)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또는 배출활동)(o)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HE_p : 해당 증설 사업장(l)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변동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AAF :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할당량을 차등 인정할 수 있는 할당계획에 명시된 할당계수

※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축효율 등과 같은 증빙자료가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해서는 할당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신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신설 시설을 포함한다.
- ※ 증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마목을 포함하며, 마목에 따른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부분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 중 적은 값으로 산정한다.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사업장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들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변동시설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 중 적은 값으로 산정한다.

$$IE_{ext,l} = MIN[\sum(NAL_h \times BM_h) - HE_l, \sum(NAL_p \times BM_h) - HE_p]$$

- $IE_{ext,l}$: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 해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l)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₂-eq)
- NAL_h : 해당 증설 사업장(l) 내 해당 이행연도 BM(h) 활동자료량 (활동자료 단위)
- BM_h : 해당 증설 사업장(l) 내 BM(h) 배출효율계수(tCO₂-eq/활동자료 단위)
- HE_l : 해당 증설 사업장(l)의 배출권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NAL_p : 해당 증설 사업장(l) 내 해당 변동시설(p)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 HE_p : 해당 증설 사업장(l) 배출권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변동시설(p)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 신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신설 시설을 포함한다.
- ※ 증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마목을 포함하며, 마목에 따른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기존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기존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사업장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기존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사업장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부분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 중 적은 값'으로 산정한다.
- ※ 배출효율기준 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은 할당계획에 따른 하나의 사업장을 하나의 시설로 간주하는 방식에 따라 '증설 사업장 증가분'과 '증설 사업장 내 변동시설의 증가분'은 같은 값으로 본다.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해당 증설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해당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내 세부 변동시설별 활동자료량 증가분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 중 적은 값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제약사항의 발생으로 인한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제약사항 발생으로 인한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발전시설별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과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제약발전량의 차이에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곱한 값의 총합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다만, 제약발전량에서 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F_{added} = \sum_k [(CON_k - CON_{mean,k}) \times HEF_k] \times AF$$

F_{added} :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 중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CON_k : 해당 발전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kWh)

$CON_{mean,k}$: 해당 발전시설(k)의 기준기간 연평균 제약발전량(kWh)

HEF_k : 해당 발전시설(k)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tCO₂-eq/kWh)

※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신규진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부터 잔여 이행연도까지)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발전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tCO₂-eq/kWh)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제약사항 발생으로 인한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사업장(「전력시장 운영규칙」제1.1.2조제1호에 따른 중앙급전발전기를 할당계획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이자 하나의 시설로 간주한다. 이하 같다)별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과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제약발전량의 차이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총합으로 산정하고, 그에

다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다만, 제약발전량에서 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F_{added} = \sum_k [(CON_k - CON_{mean,k}) \times BM_k] \times AF$$

F_{added}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CON_k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MWh)

$CON_{mean,k}$: 해당 사업장(k)의 기준기간 연평균 제약발전량(MWh)

BM_k : 해당 사업장(k)의 배출효율계수(tCO_2 -eq/MWh)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 \leq 1.0$)

※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3]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의무에 의한 열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따라 열 공급량이 증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의 차이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열과 전기의 배분(이하 "열전비"라 한다)은 목표관리지침 별표 27 또는 배출량 인증 지침 별표 17의 '열(스팀)의 외부 공급 시 배출계수 개발 방법' 중 '열병합 발전시설에서 열(스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의 산정식을 활용하되, 해당 업체에서 열전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F_{added} = \sum_k [(E_{heat,k} - E_{int,k}) - (HE_{heat_mean,k} - HE_{int_mean,k})] \times AF$$

F_{added} :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 중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의무에 의한 열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E_{heat,k}$: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공급량은 제외)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_2 -eq)

$E_{int,k}$: 해당 사업장(k)의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_2 -eq)

HE_{heat_mean} :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공급량은 제외)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HE_{int_mean,k}$: 해당 사업장(k)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집단에너지사업2업의 공급의무에 의한 열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따라 열 공급량이 증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열 공급량(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배출효율기준 활동자료량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은 공급량을 제외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차이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F_{added} = \sum_k [(NAL_{heat,k} - NAL_{int,k}) \times BM_k - (HAL_{heat_mean,k} - HAL_{int_mean,k}) \times BM_k] \times AF$$

F_{added}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의무에 의한 열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NAL_{heat,k}$: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GJ)

$NAL_{int,k}$: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은 활동자료량(GJ)

HAL_{heat_mean} :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기준기간 연평균 활동자료량(GJ)

$HAL_{int_mean,k}$: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은 기준기간 연평균 활동자료량(GJ)

BM_k : 해당 사업장(k)의 배출효율계수(tCO₂-eq/GJ)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의무에 의한 열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④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업체의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3추가운항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업체의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에 따른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F_{added} = (E_i - HE_{mean,i}) \times AF$$

F_{added} :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E_i : 해당 업체의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HE_{mean,i}$: 해당 업체의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에 따른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5 관련 법령에 의해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관련 법령에 의해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업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에서 해당 업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의 차이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F_{added} = \sum_k (E_k - HE_{mean,k}) \times AF$$

F_{added} :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E_k : 해당 시설(k)의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tCO₂-eq)

$HE_{mean,k}$: 해당 시설(k)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tCO₂-eq)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6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대책 및 조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대책 및 조치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업체 내 관련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업체 내 관련시설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F_{added} = \sum_k (E_k - HE_{mean,k}) \times AF$$

F_{added} :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 대책 및 조치로 인한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E_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HE_{mean,k}$: 해당 시설(k)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대책 및 조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7]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업체 내 해당 배출시설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업체 내 해당 배출시설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F_{added} = \sum_k (E_k - HE_{mean,k}) \times AF$$

F_{added} :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E_k : 해당 시설(k)의 가연성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HE_{mean,k}$: 해당 시설(k)의 가연성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별표3]

업체별 할당취소량 산정방법(제29조 관련)

①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취소 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권은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업체가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을 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그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에 한한다.

※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및 예비분 이전량은 각각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F_{cancelled} = \sum_j F_{initial,j} \times \frac{D_j}{D_{e,j}}$$

- $F_{cancelled}$: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 $F_{initial,j}$: 해당 사업장(j)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D_j : 해당 사업장(j)의 해당 이행연도의 폐쇄일로부터 이행연도 말까지 남아있는 잔여일수(day)
- $D_{e,j}$: 해당 사업장(j)의 해당 이행연도의 예정된 가동일수(day)

② 취소 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취소 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대한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F_{cancelled} = F_{initial,i}$$

- $F_{cancelled}$: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 $F_{initial,i}$: 업체의 해당 취소 사유 발생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③ 제23조의 사유 중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제23조의 사유 중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

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별표 1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이와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에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고,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F_{cancelled} = \sum [(F_{initial,k} \times \frac{D_k}{D_{e,k}}) - MIN(E_{real,t} - HE_t, E_{real,u}) \times AF]$$

$F_{cancelled}$: 제23조의 사유 중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F_{initial,k}$: 생산을 이전해 준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D_k : 생산을 이전해 준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의 폐쇄일로부터 이행연도 말까지 남아있는 잔여일수(day)

$D_{e,k}$: 생산을 이전해 준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에 예정된 가동일수(day)

$E_{real,t}$: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t)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HE_t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t)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E_{real,u}$: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t)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 다만,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0' 보다 크거나 같다 ($MIN(E_{real,t} - HE_t, E_{real,u}) \geq 0$).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제23조의 사유 중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 중 적은 값을 말한다)에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고,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F_{cancelled} = \sum [(F_{initial,k} \times \frac{D_k}{D_{e,k}}) - [MIN\{(NAL_{real,t} \times BM_t) - HE_t, NAL_{real,u} \times BM_t\} \times AF]]$$

- $F_{cancelled}$: 제23조의 사유 중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 $F_{initial,k}$: 생산을 이전해 준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D_k : 생산을 이전해 준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의 폐쇄일로부터 이행연도 말까지 남아있는 잔여일수(day)
- $D_{e,k}$: 생산을 이전해 준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에 예정된 가동일수(day)
- $NAL_{real,t}$: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t)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단위)
- HE_t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t)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NAL_{real,u}$: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t)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단위)
- BM_t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t)의 배출효율계수(tCO₂-eq/활동자료 단위)
-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 \leq 1.0$)

※ 다만,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0' 보다 크거나 같다
 $(MIN\{(NAL_{real,t} \times BM_t) - HE_t, NAL_{real,u} \times BM_t\} \geq 0)$.

②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가동중지·가동정지·폐쇄 등에 따른 배출권 취소량

사업장 내 일부 배출시설의 가동중지·가동정지·폐쇄 등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에 한한다.

※ 사업장 내 일부 배출시설의 가동중지·가동정지·폐쇄 등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및 예비분 이전량은 각각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일시적·간헐적 가동중지, 지속적 가동정지,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제24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F_{cancelled} = \sum_j \{F_{initial,j} - (E_{real,j} \times AF)\}$$

- $F_{cancelled}$: 제24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 $F_{initial,j}$: 해당 사업장(j)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E_{real,j}$: 해당 사업장(j)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 \leq 1.0$)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제24조제2항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F_{cancelled} = \sum_j \{F_{initial,j} - (NAL_{real,j} \times BM_j \times AF)\}$$

$F_{cancelled}$: 제24조제2항의 사유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F_{initial,j}$: 해당 사업장(j)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NAL_{real} : 해당 사업장(j)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단위)

BM_j : 해당 사업장(j)의 배출효율계수(tCO_2 -eq/활동자료 단위)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 \leq 1.0$)

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중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제24조제1항의 사유 중 해당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생산을 이전해 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 배출량에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을 더한 값에 제12조

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고,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F_{cancelled} = \sum [F_{initial,k} - \{(E_{real,k} + \text{MIN}(E_{real,t} - HE_t, E_{real,m})) \times AF\}]$$

$F_{cancelled}$: 제24조제1항의 사유 중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F_{initial,k}$: 생산을 이전해 준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E_{real,k}$: 생산을 이전해 준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_2 -eq)

$E_{real,t}$: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t)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_2 -eq)

HE_t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t)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_2 -eq)

$E_{real,m}$: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t)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_2 -eq)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 \leq 1.0$)

※ 다만,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0' 보다 크거나 같다 ($\text{MIN}(E_{real,t} - HE_t, E_{real,m}) \geq 0$).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제24조제2항의 사유 중 해당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생산을 이전해 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 중 적은 값을 말한다)을 더한 값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고,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F_{cancelled} = \sum [F_{initial,k} - [NAL_{real,k} \times BM_k + MIN\{(NAL_{real,t} \times BM_t) - HE_t, NAL_{real,m} \times BM_t\}] \times AF]$$

- $F_{cancelled}$: 제24조제2항의 사유 중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 $F_{initial,k}$: 생산을 이전해 준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NAL_{real,k}$: 생산을 이전해 준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단위)
- BM_k : 생산을 이전해 준 사업장(k)의 배출효율계수(tCO₂-eq/활동자료 단위)
- $NAL_{real,t}$: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t)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단위)
- HE_t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t)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NAL_{real,m}$: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t)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단위)
- BM_t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t)의 배출효율계수(tCO₂-eq/활동자료 단위)
-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 다만,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0' 보다 크거나 같다
 $(MIN\{(NAL_{real,t} \times BM_t) - HE_t, NAL_{real,m} \times BM_t\} \geq 0)$.

③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제25조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에 한한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및 예비분 이전량은 각각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제25조의 사유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제25조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F_{cancelled} = \sum_j F_{initial,j}$$

- $F_{cancelled}$: 할당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 $F_{initial,j}$: 해당 사업장(j)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④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에 한한다.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및 예비분 이전량은 각각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제26조제1호의 사유에 따라 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가 폐업,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존속이유를 잃어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가 폐업,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존립하지 않아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F_{cancelled} = F_{initial,k} + F_{initial,l}$$

$F_{cancelled}$: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F_{initial,k}$: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F_{initial,l}$: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모든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② 제26조제2호의 사유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다른 업체에 양도 등의 사유로 법 제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 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다른 업체에 양도 등으로 법 제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함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F_{cancelled} = F_{initial,k} + F_{initial,l}$$

$F_{cancelled}$: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F_{initial,k}$: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F_{initial,l}$: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모든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③ 제26조제3호의 사유에 따라 자발적 참여 업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자발적 참여 업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

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F_{cancelled} = F_{initial,k} + F_{initial,l}$$

$F_{cancelled}$: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F_{initial,k}$: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F_{initial,l}$: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모든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④ 제26조제4호의 사유에 따라 법인의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해당업체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어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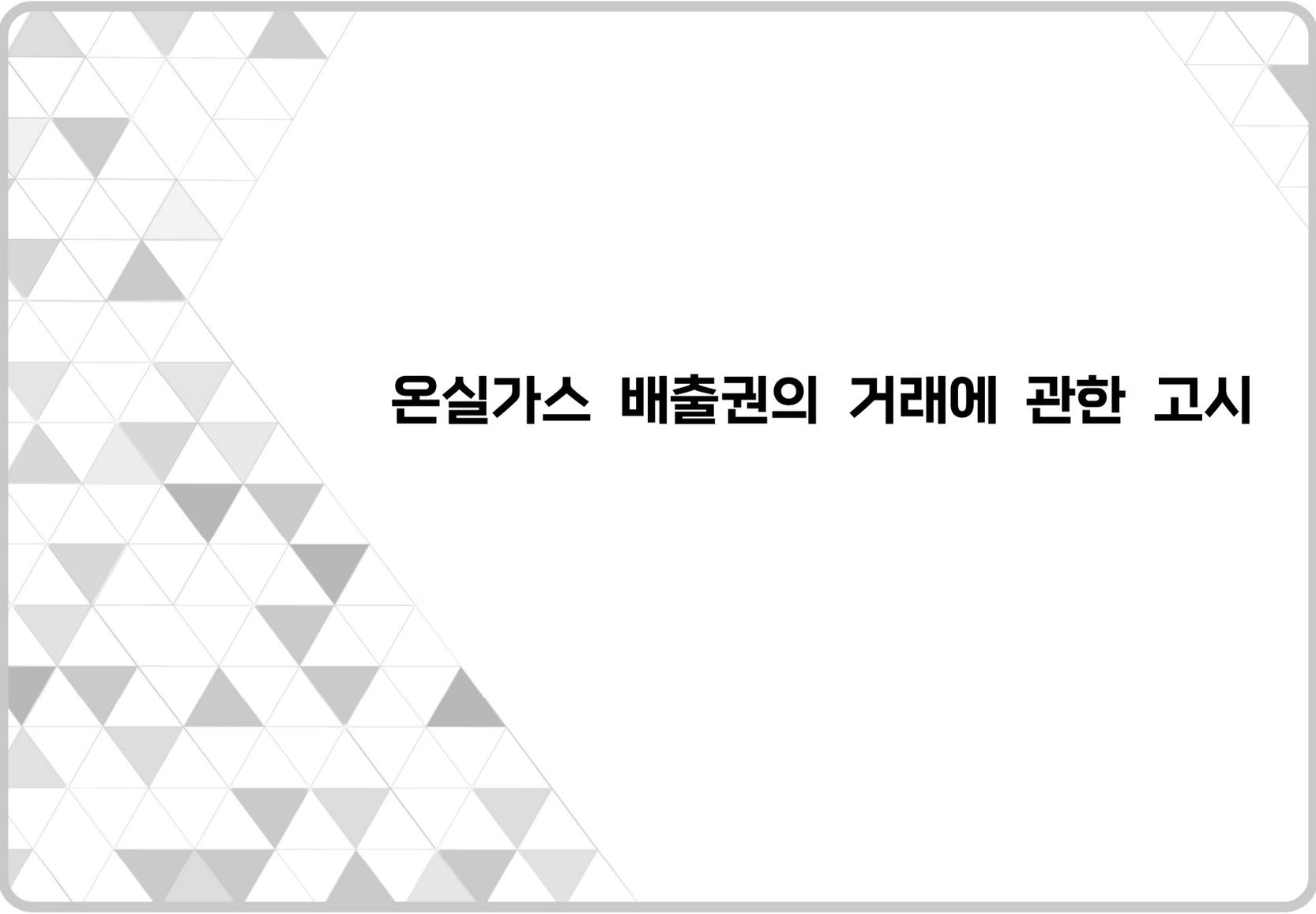
할당대상업체가 파산, 영업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전과 같이 존속할 수 없어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F_{cancelled} = F_{initial,k} + F_{initial,l}$$

$F_{cancelled}$: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F_{initial,k}$: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F_{initial,l}$: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모든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3
제2조(정의)	63

제2장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제1절 배출권 거래 계정의 종류

제3조(계정 구분)	63
제4조(관리자 계정)	63
제5조(사용자 계정)	64

제2절 계정의 등록

제6조(관리자 계정의 등록)	64
제7조(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64
제8조(사용자 계정의 등록)	64
제9조(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자격)	64
제10조(등록신청의 반려)	64
제11조(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	65
제12조(계정등록 수수료)	65

제3절 계정 정지 및 폐쇄

제13조(계정의 일시사용중지 신청)	65
제14조(계정 정지)	65
제15조(계정 폐쇄)	66

제4절 계정 정보의 변경

제16조(계정 정보의 갱신)	66
제17조(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변경)	66

제5절 배출권의 생성 및 할당 배출권의 이전

제18조(배출권의 생성)	66
제19조(할당 배출권의 이전)	66

제6절 배출권의 제출

제20조(배출권의 제출)	67
제21조(이월 및 차입)	67
제22조(배출권의 폐기)	67

제7절 시스템 간 연계

제23조(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67
제24조(거래소 시스템과의 연계)	67

제8절 정보관리 및 보호 등

제25조(정보누설 금지) 67

제3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제26조(배출권 장외거래의 방법) 67

제27조(배출권 장외거래의 신고) 67

제28조(배출권 장내거래의 신고) 67

제29조(규제의 재검토) 68

부칙 68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8-67호, 2018. 5.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거래소시장"이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말한다.
2. "배출권 장내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의 거래를 말한다.
3. "배출권 장외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의 거래를 말한다.

제2장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제1절 배출권 거래 계정의 종류

제3조(계정 구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배출권 거래 계정은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관리자 계정) 제3조에 따른 관리자 계정이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영 제24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배출권 거래 계정을 말한다.

1. 총량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국가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 총수량을 생성하고 다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2. 무상할당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3. < 삭제 >
- 3의2. 유상할당 계정 :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4. 예비분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보유하기 위한 계정
5. 제출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배출권을 폐기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6. 폐기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배출권의 영구 폐기를 위한 계정
7. 거래소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권 장내거래의 청산·결제를 목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계정
8. 기타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이하 "종합정보센터장"이라 한다)이 내규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

하도록 정한 계정

제5조(사용자 계정) ① 사용자 계정은 할당대상업체 및 거래 참여자의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정으로 개인 계정과 법인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계정에는 해당 계정의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보유하는 배출권, 상쇄배출권을 등록한다.

③ < 삭제 >

제2절 계정의 등록

제6조(관리자 계정의 등록) 환경부장관은 직권으로 관리자 계정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다.

제7조(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삭제 >
2. < 삭제 >
3. 제11조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동의서
4.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제8조(사용자 계정의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가 제출한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를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 명의의 사용자 계정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 명의의 사용자 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자격) ① 제7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18세 이상의 자
 2. 법인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0조(등록신청의 반려)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최근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
 5. 계정 등록신청이 불공정거래 또는 위법한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계정 등록신청 반려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그 반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 ① 계정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개인 계정의 경우 계정의 명의자 본인
 2. 법인 계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 ② 법인 계정의 대표자는 2인 이하의 계정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사용자 계정에서의 배출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와 제2항에 따른 계정관리인에 한한다.

제12조(계정등록 수수료) 사용자 계정의 배출권등록부 등록 및 등록유지, 계정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변경, 계정의 일시사용중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 관련 증명서 발급 시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접수된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3절 계정 정지 및 폐쇄

제13조(계정의 일시사용중지 신청)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계정의 일시사용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정의 일시사용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 계정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제출, 일시사용중지 신청 시점에 발생한 거래의 청산·결

제를 위하여 일시사용중지된 계정에서 배출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용자 계정을 유지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정의 일시사용중지를 신청한 신청인이 계정의 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그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일시사용중지된 계정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계정 정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사용자 계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제출, 계정 정지 시점에 발생한 거래의 청산·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우에도 배출권을 이전시킬 수 있다.

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
 3. 잔고 배출권이 없는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4. 계정대표자가 궤위된 경우
 5. 부과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6.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
 7. 과징금을 미납한 경우
 8. 배출권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9. 할당대상업체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사용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계정 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 폐쇄) ① 환경부장관은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의 폐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 폐쇄의 신청이 계정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정사용 정지의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합병·분할·파산 등에 따라 계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 계정의 배출권을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4절 계정 정보의 변경

제16조(계정 정보의 갱신)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과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년 말일까지 이를 통보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주기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계정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계정대표자에게 정보의 갱신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17조(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변경) ①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은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의 변경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의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5절 배출권의 생성 및 할당 배출권의 이전

제18조(배출권의 생성)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의 배출권 총 수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 생성한다.

제19조(할당 배출권의 이전) ① 환경부장관은 예비분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을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예비분 추가할당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무상할당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서 무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영 제16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각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상할당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서 유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유상할당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6절 배출권의 제출

제20조(배출권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은 할당대 사업체가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이월 및 차입) ①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제출한다.

② 차입한 배출권은 법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배출권의 폐기) 환경부장관은 폐기 계정으로 이전된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한다.

제7절 시스템 간 연계

제23조(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① 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은 종합정보센터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24조(거래소 시스템과의 연계) ① 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배출권 거래소가 구축한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은 종합정보센터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8절 정보관리 및 보호 등

제25조(정보누설 금지) 이 법과 영에 따른 배출권 거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각각의 계정 및 거래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제26조(배출권 장외거래의 방법) 배출권 장외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제27조(배출권 장외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 장외거래를 한 양도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배출권등록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권 종류, 수량, 거래일시, 가격(매매 등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 신고서
2.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 합의 공증서류
- ② 제1항제1호의 거래 신고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른다.
-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이 해당 거래를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종합정보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삭제
- ⑤ 삭제

제28조(배출권 장내거래의 신고) 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배출권 거래소가 청산·결제를 위하여 종합정보센터장에게 결제할 배출권을 통지하거나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 영 제2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05호, 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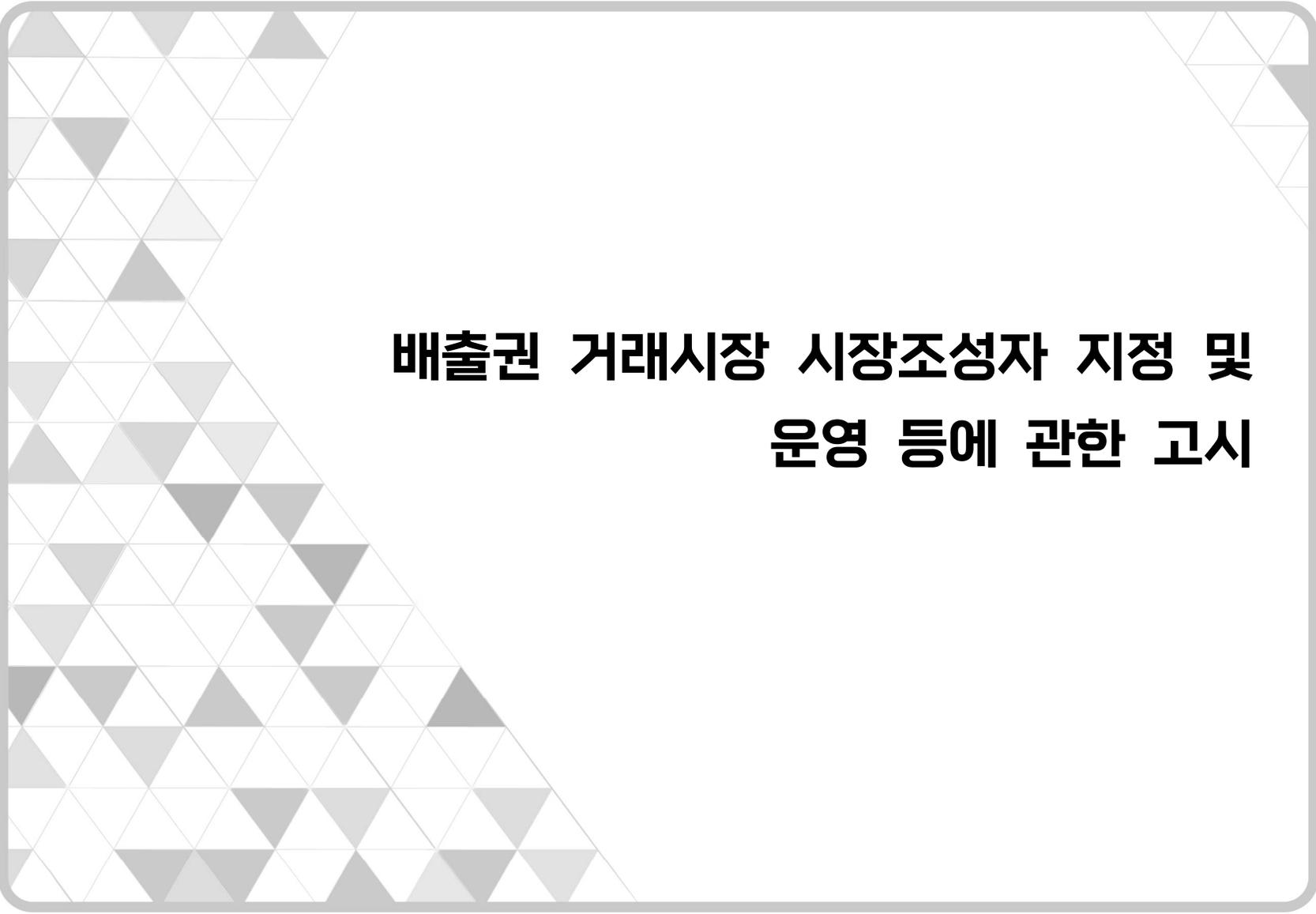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

부칙 〈제2018-67호, 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3
제2조(정의)	73

제2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시장조성자 지정)	73
제4조(시장조성자의 의무)	74
제5조(시장조성상황 보고 등)	74
제6조(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74
제7조(배출권의 대여)	74
제8조(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74

제3장 보칙

제9조(기타)	75
제10조(재검토키한)	75
부칙	75
[별표 1]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76
[별표 2] 시장조성자 의무이행 평가기준	76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15호, 2021. 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조성"이라 함은 법 제22조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의해 개설된 시장(이하 "배출권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에 대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시장조성자"라 함은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자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배출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과 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수립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정한 시장조성 예비분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말한다.
4. "호가"라 함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2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시장조성자 지정) ① 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별표1에서 정한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이행연도 중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장조성업무 개시일 2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정할 수 없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이행연도 중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장조성업무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시장조성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이행연도 중에 지정한 경우 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이행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⑤ 시장조성자는 지정 유효기간 중 해고, 퇴직 등의 사유로 시장조성수행인력이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2개월 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충족시키고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장조성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시장조성자 재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시장조성자의 의무) ① 시장조성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장내 거래일에 배출권에 대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제출해야 하는 호가 건수 및 수량, 호가 제출시간,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의 호가 범위 등 호가의무 이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시장조성상황 보고 등) ① 시장조성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거래소를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배출권 종류별 보유현황 및 거래실적
 2. 제4조제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실적
- ②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조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 운영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협의, 정책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거래소로 하여금 시장조성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실적을 매월 평가한다. 이 경우 의무이행의 평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래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실적 평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배출권의 대여) ①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조성 예비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각 시장조성자에게 물량을 차등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조성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된 이후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대여·상환 조건 및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시장조성자 간 협약에 따른다.

제8조(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배출권 거래에 있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 조종행위를 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의한 보고사항 등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고의로 보고를 지연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의무 이행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보칙

제9조(기타)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31호, 2019. 1.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5호, 2021. 1. 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지정기준	제출서류 등
수행인력	-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 지정 여부	2인 이상	- 해당 인력 이력서 등 평가항목 입증 자료

[별표 2]

시장조성자 의무이행 평가기준

1. 일반

가. 시장변동성 확대기간 외의 모든 거래일에 적용

나.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의무평가항목	배 점	배점 방식
호가제출 시간 (제4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별 상기조건 충족시 만점(45점) - 제출의무시간 : 10:10~11:30 중 - 매수·매도스프레드 : 500원 이하 * 매수·매도호가 수량 중에서 수량이 큰 호가와 수량이 작은 호가의 수량 차이가 2: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호가당 2분 이상 유지된 호가 시간의 합계 : 30분 이상 * 2분 이내 정정·취소시 미인정 (정정 전 일부 체결시는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일 항목별 점수* 산출 ○ 의무이행 시 ⇒ 항목별 만점 ○ 의무 미이행 시 ⇒ 항목별 만점 × $\frac{\text{이행실적}}{\text{의무기준실적}}$ ② 일별 점수 산출 ⇒ ∑ 해당일의 항목별 점수 ③ 월별 점수* 산출 ⇒ $\frac{\sum \text{일별 점수}}{\text{월별 거래일수}} + \text{정책협조점수}$
호가제출 수량 (제4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누적 3천톤 이상시 만점(45점) * 전술한 호가제출시간의 조건을 충족하는 호가수량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별 점수 만점 : 90점 = 제출시간(45점)+제출수량(45점) - 월별 점수 만점 : 100점 = 일별점수(90점)+정책협조(10점)
정책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평가 : 만점(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다. 가점항목 및 배점

가점 항목	배점 방식
체결 수량	○ 체결수량 일 1,500톤 이상시 해당일 일별 점수 10점 추가 부여 - 협의매매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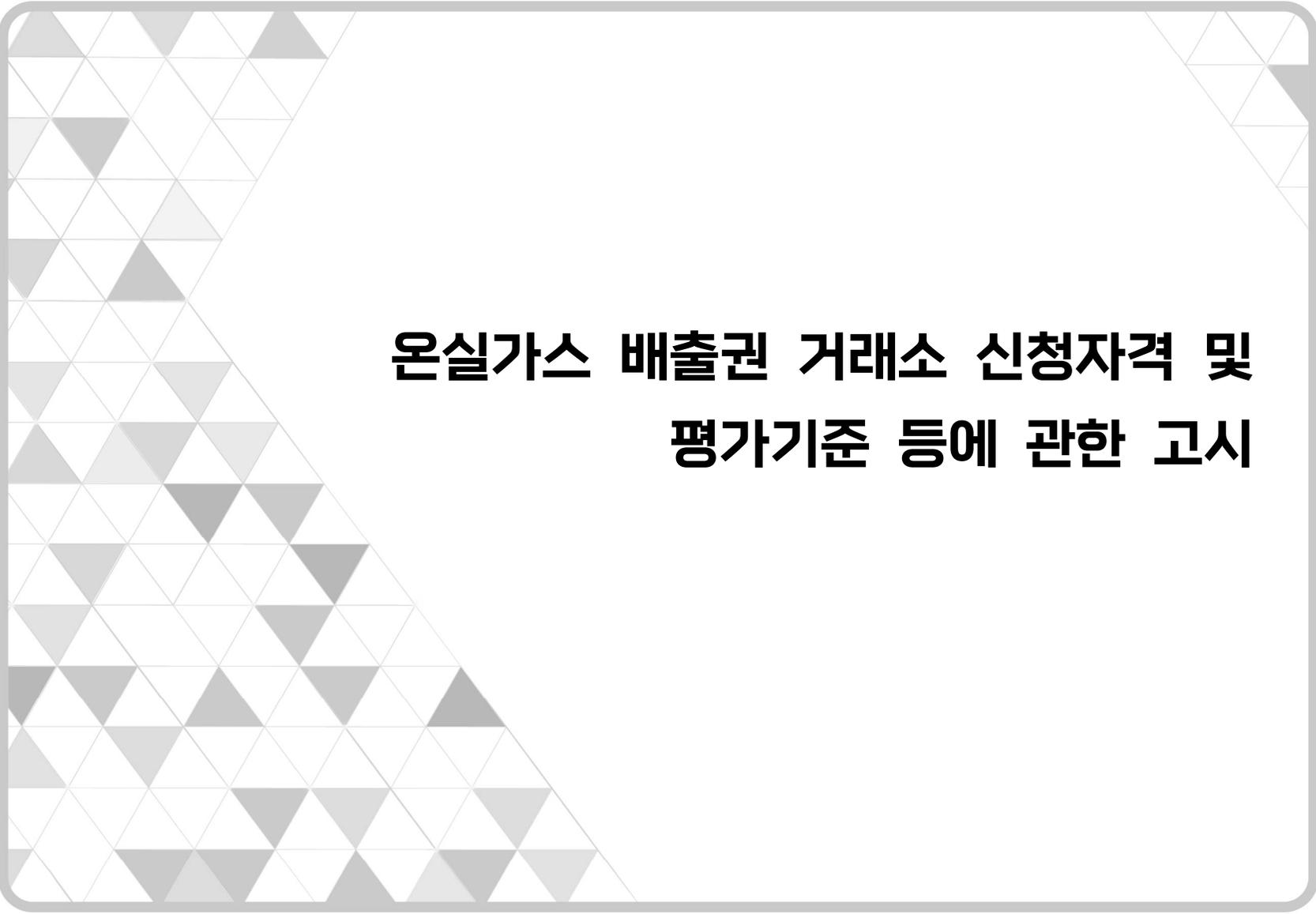
2. 시장변동성 확대기간

가. 시장변동성 확대기간은 해당일 배출권 가격이 20일전 대비 5%이상, 3일전 대비 0% 이상으로 상승(하락)한 날이 5일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변동성이 확대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익일 발동할 수 있으며, 5일이상 기준 미 충족시 또는 필요한 경우 익일 해제할 수 있다.

나. 시장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의무평가항목	배 점	배점 방식
거래비중 (제4조제2항)	○ 일별 상기조건 충족시 만점(15점) - (가격하락시) 시장거래량*의 5% 이상 거래량 충족 후, 매도량 대비 매수량이 300%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 - (가격상승시) 시장거래량*의 5% 이상 거래량 충족 후, 매수량 대비 매도량이 300%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 *장종료전 단일가매매 거래량 제외	① 해당일 항목별 점수* 산출 ○ 의무이행 시 ⇒ 항목별 만점 ○ 의무 미이행 시 ⇒ 항목별 만점 × $\frac{\text{이행실적}}{\text{의무기준실적}}$ ② 일별 점수 산출 ⇒ ∑ 해당일의 항목별 점수 ③ 월별 점수* 산출 ⇒ $\frac{\sum \text{일별 점수}}{\text{월별 거래일수}} + \text{정책협조점수}$

의무평가항목	배 점	배점 방식
기여수량 (제4조제2항)	○ 일별 상기조건 충족시 만점 (50점) - (가격하락시) 매수호가를 제출하여 직전체결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체결한 양이 시장 전체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체결한 시장매수량의 15% 이상인 경우 만점부여 - (가격상승시) 매도호가를 제출하여 직전체결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체결한 양이 시장 전체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체결한 시장매도량의 15% 이상인 경우 만점부여 * 장종료전 단일가매매 거래량 제외	- 일별 점수 만점 : 90점 =거래비중(15점)+기여수량(50점)+기여일수(25점) - 월별 점수 만점 : 100점 =일별점수(90점)+정책협조(10점)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기여일수 (제4조제2항)	○ 월별 상기조건 충족시 만점 (25점) - (가격하락시) 가격하락기 충족일수 대비 기여수량이 존재하는 일수가 70%이상인 경우 만점부여 - (가격상승시) 가격상승기 충족일수 대비 기여수량이 존재하는 일수가 70%이상인 경우 만점부여	
정책 협조	○ 월별 평가 : 만점(10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83
---------------	----

제2장 지정신청

제2조(신청공고)	83
제3조(지정신청)	83
제4조(신청자격)	83

제3장 평가자문위원회

제5조(평가자문위원회)	84
제6조(위원의 의무 등)	84
제7조(위원회의 운영)	84
제8조(평가자문의견서의 제출)	84

제4장 평가기준 및 지정절차

제9조(평가기준)	85
제10조(거래소 지정)	85
제11조(지정취소 등)	85
제12조(규제의 재검토)	85

부칙	85
----------	----

[별표 1] 거래소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제9조제1항 관련)	86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5. 1.] [환경부고시 제2018-69호, 2018. 5.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정신청

제2조(신청공고) 환경부장관은 거래소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래소 지정신청 공고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거래소 지정 신청자격
2. 거래소 지정 신청접수 마감일시 및 접수처
3. 거래소 지정 평가일정
4. 거래소 지정 평가기준
5. 거래소 지정 평가를 위하여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목록 및 서식

제3조(지정신청) ① 거래소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기관(법인과 법인이 아닌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거래소 지정신청서와 제2조제5호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공고된 접수 마감일 시까지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거래소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제3조에 따라 거래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최근 1년 이상 청산·결제 시스템(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였던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공인거래소"라 한다)에서 경쟁매매 또는 경매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공인거래소에서 청산·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3. 공인거래소에서 경매 또는 거래에 관한 시장감시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4. 공인거래소에서 경매 또는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5. 공인거래소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6. 전자통신 정보보안과 관련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②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기관은 거래소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3장 평가자문위원회

제5조(평가자문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적 기술평가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배출권 거래제, 매매거래업무, 청산·결제업무, 시장감시,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자문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모든 위원들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④ 위원장은 평가자문의견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⑦ 위원의 명단, 평가자문의견서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평가자문의견서의 제출) ①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이 작성한 평가자문의견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자문의견서는 제9조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기준 및 지정절차

제9조(평가기준) ① 거래소 지정을 위한 평가는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거래소 지정에 대한 평가 시 평가기준일은 거래소 지정신청 마감일로 한다.

제10조(거래소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자문의견서를 참조하여 거래소 지정검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정검토안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소를 지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기관의 명칭
2. 지정기관의 소재지
3. 지정기관의 업무범위
4. 지정일자

제11조(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거래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이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른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정 이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3호, 2016. 6.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9호, 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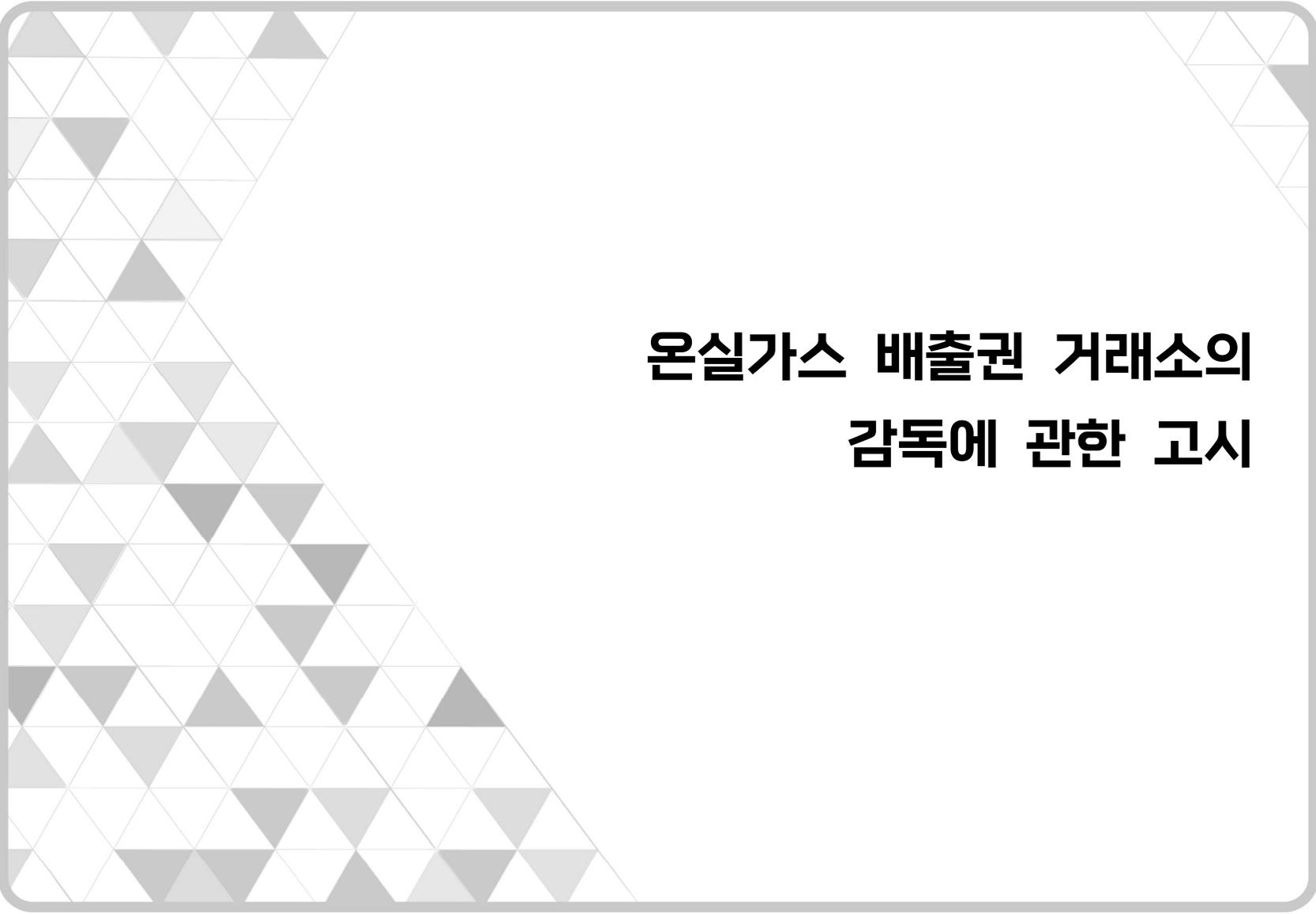
[별표 1]

거래소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제9조제1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주요평가내용	배점
1. 거래의 안정성 확보	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경쟁매매 및 경매할당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가능성 2) 청산 및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가능성 3) 정보관리 및 시스템안정성을 포함한 보안수준	15
	나. 안정적 거래운영	1) 경매담보금의 반환기간, 경매 또는 거래시점과 결제완료 시점간의 기간 및 동 기간 중 거래가능성 확보 방안 2) 지급준비금의 확보 또는 지급 보증의 안전성 확보 가능성 3) 대금지급 지체 또는 미지급시 매도자 보호를 위한 조치 수준 4) 거래피해 발생시에 대비한 합리적 이고 신속한 보상절차의 존재 및 다른 회원의 피해방지 조치의 수준 5) 금융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거래 정보의 보고 및 고객확인임무의 이행가능성 수준 6) 재판 외 분쟁조정 절차의 제공 가능성	15

대분류	소분류	주요평가내용	배점
	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 가능성	1)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가능성 수준 2)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가능성 수준 3)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주무관청 보고 체계 구축 가능성	10
	라. 조직 구성·운영의 합리성 및 유사 경험 축적	1)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구성 및 책임분배와 업무관리의 합리성·일관성 수준 2) 정보보안 유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직구성 수준 3) 배출권거래소 운영 관련 조사연구 등의 수행경험, 경쟁매매, 경매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운영경험 여부	10
2. 시장활성화	가. 거래참여 용이성 및 고객서비스 수준	1) 다수의 거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수준 2) 거래절차 등의 간소화를 통한 용이성 확보 수준 3) 중소할당업체의 거래참여 용이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수준 4) 전화·이메일 등에 의한 고객상담 및 분야별 헬프데스크 설치 방안 5) 웹사이트에 거래관련 법령, 위험요소, 청산·결제 등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 수준	15

대분류	소분류	주요평가내용	배점
	나. 국제 탄소시장 연계 가능성	1) 배출권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국외 거래소와의 시스템 호환 등 시스템 연계 가능성 수준	5
3. 거래 및 운영 비용의 최소화	가. 고정, 유동 및 운영 비용 수준	1) 거래소 회원가입비, 경매참가 수수료, 거래망 사용료 등 고정 수수료 수준 2) 경매 및 거래 수수료 등 변동 수수료 수준 3) 거래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수준	20
4. 정책수행능력	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능력	1)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에 관한 이해도 2)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수행에 필요한 정보(현황, 동향 등) 수집·분석 능력	1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93
제2조(정의)	93

제2장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제3조(지정요건의 유지)	93
제4조(보고)	93
제5조(매매체결 대상상품)	93
제6조(시세의 공표)	93
제7조(정보이용금지 등)	93
제8조(정보교류차단)	94
제9조(긴급사태시의 처분)	94
제10조(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조치)	94
제11조(규제의 재검토)	95
부칙	9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8-68호, 2018. 5.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제8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거래소시장"이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말한다.
2. "배출권 장내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 또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의 거래를 말한다.
3. "배출권 장외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 또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의 거래를 말한다.

제2장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제3조(지정요건의 유지) 배출권 거래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장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건전한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조(매매체결 대상상품)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는 대상상품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2. 상쇄배출권
3.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배출권 관련 상품

제6조(시세의 공표) 배출권 거래소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권 상품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 등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의 공여
2. 손익의 분배
3. 채무보증

4. 담보제공

5.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8조(정보교류차단) ①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4호의 업무,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 관련 징계업무(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 등"이라 한다)와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장감시업무 등과 청산업무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청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를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3.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

로 저장되어 관리·감독·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배출권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2. 매매거래정지 등 배출권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 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9조(긴급사태시의 처분)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1항의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8. 제8조를 위반한 경우
 9. 제9조에 따른 긴급사태시의 처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고 또는 업무의 정지 조치 대상이 되는 배출권 거래소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배출권 거래소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배출권 거래소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배출권 거래소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4호, 2016. 6.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33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68호, 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목 차

제1조(목적)	101
제2조(설비기준)	101
제3조(협약체)	101
제4조(재검토키한)	101
부칙	101
[별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비기준	102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203호, 2021. 10. 1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설비"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비기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거래계정을 등록하려는 자는 원활한 배출권 거래 등을 위한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체)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 등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협의,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로 하여금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2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203호, 2021. 10.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비기준

1. 다음의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 (1) 할당대상업체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문을 직접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및 해당 주문을 중개할 수 있는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2) 배출권 거래소와의 시스템 연결 등을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의 증권시장에 배정된 통신회선 및 세션이 구축되어 있을 것
- (3)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등 업무 관련 전산설비의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어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 (4)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5)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1) 이해상충부서 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추는 것
-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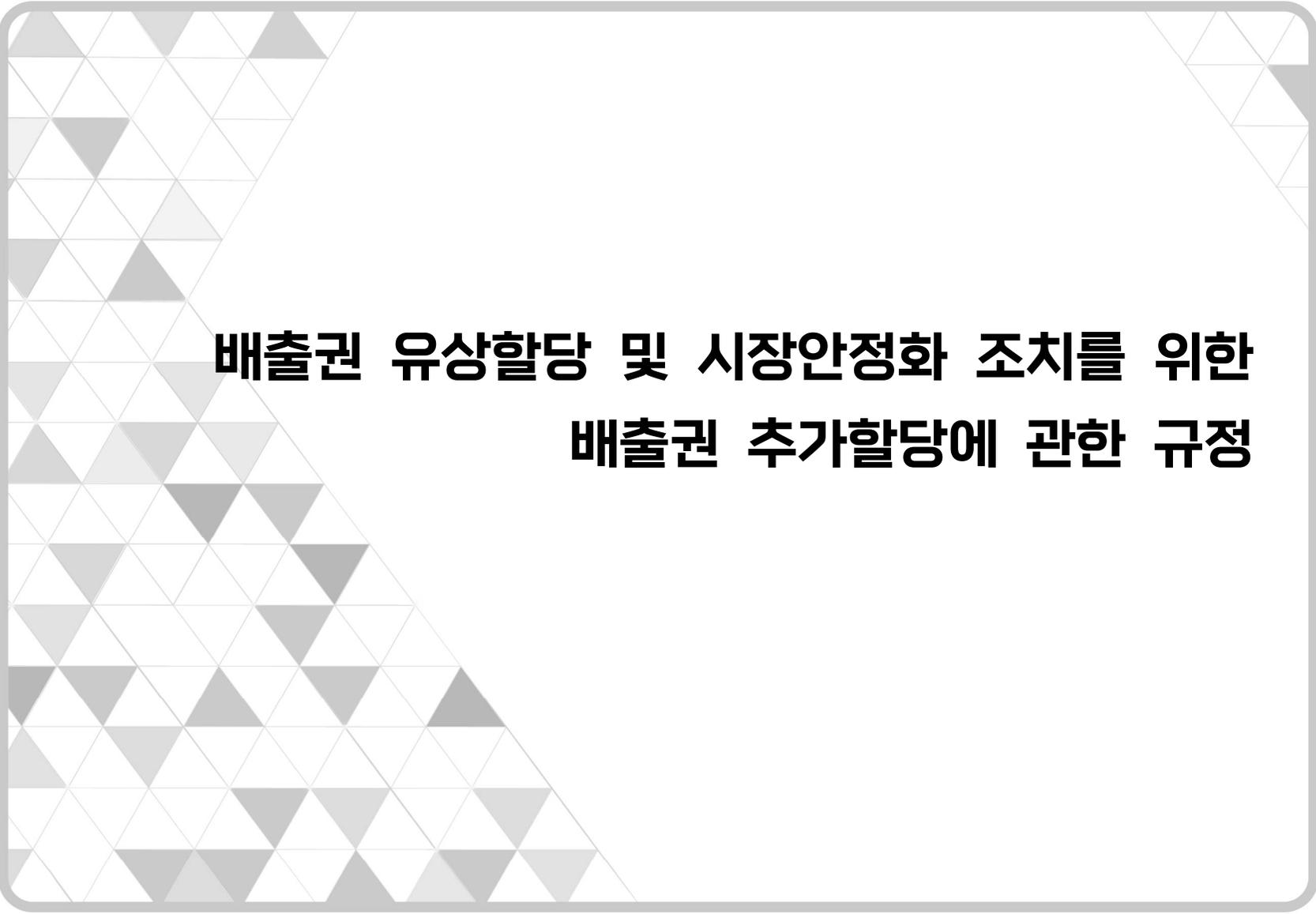
다. 보안설비

-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추는 것
-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 (1) 정전·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 (2)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그 밖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인적 설비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07
제2조(정의)	107

제2장 배출권 유상할당

제1절 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 일정

제3조(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 공고)	107
제4조(입찰 일시 등)	107

제2절 입찰 참가 및 낙찰 등

제5조(입찰참가자)	108
제6조(입찰 및 낙찰 방법)	108
제7조 (입찰수량의 조정 또는 입찰 취소)	108
제8조(응찰 취소 제한 등)	108

제3절 공고 및 권리 이전

제9조(입찰 및 낙찰결과의 공고)	108
제10조(낙찰금액의 납입과 배출권의 이전)	109

제3장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제11조(추가할당 대상 및 방법 등)	109
제12조(추가할당 절차 등)	109

제4장 보칙

제13조(수수료 등)	109
제14조(기타)	109
제15조(재검토기한)	109
부칙	110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108호, 2020. 5.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2. "유상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유상할당을 받는 할당대상업체(이하 "유상할당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매"라 함은 법 제22조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의해 개설된 시장(이하 "배출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제2호의 배출권 유상할당 및 제4호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하여 배출권시장에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보유 배출권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을 유상으로 추가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배출권 유상할당

제1절 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 일정

제3조(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 공고) ① 환경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유상 할당에 관한 연간 유상 할당 계획을 매 이행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유상할당 계획상의 매회 입찰예정일 5거래일 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유상 할당 규모, 입찰 방식, 입찰 조건,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4조(입찰 일시 등) ① 입찰은 매월의 둘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을 정기 입찰일로 한다. 다만,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입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입찰 시간은 입찰일 13:00시부터 14:00시까지로 한다.

③ 입찰은 거래소의 호가입력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정전 또는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입찰이 어려운 경우 환경부장관이 거래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에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입찰 참가 및 낙찰 등

제5조(입찰참가자) 제2조제2호의 유상할당 경매에는 유상할당업체가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 및 낙찰 방법) ① 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으로 하고,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한다.

② 입찰참가자는 하나의 응찰가격을 제출하며, 호가가격은 1 배출권당 원화로 표시한다. 이 경우 호가가격단위는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이하 "거래소 운영규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른 호가가격단위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경매가격의 공정한 형성을 위하여 낙찰 하한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 하한가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하한가에 미치지 못하는 응찰은 무효로 한다.

④ 해당 입찰일에 참가한 할당업체별 낙찰수량 최대한도는 해당 입찰일의 입찰예정 배출권 수량(이하 "총 입찰수량"이라 한다)의 15%이상 30%이하로 한다.

⑤ 낙찰은 유효 응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유효한 총 응찰수량이 총 입찰수량 이상일 때에는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격들 중 최저가격을 낙찰가격으로 하며, 유효한 총 응찰수량이 총 입찰수량에 미달할 때에는 낙찰 하한가를 낙찰가격으로 한다.

⑥ 낙찰가격으로 체결될 배출권 수량의 합이 총 입찰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배정될 낙찰수량은 응찰번호 순서대로 배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까지에 따른 낙찰수량의 총합이 총 입찰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초과수량을 차기 유상할당 경매 입찰수량에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⑧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응찰가격에 응찰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거래소의 수수료 및 거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입찰보증금으로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입찰수량의 조정 또는 입찰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수량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응찰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응찰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3. 공정한 낙찰가격 형성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낙찰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응찰 취소 제한 등)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에 한하여 응찰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명백한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환경부장관은 직권으로 응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입찰 결과에 따른 대금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낙찰자에 대해서는 차기 이후 입찰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절 공고 및 권리 이전

제9조(입찰 및 낙찰결과의 공고)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및 낙찰결과를 공고할 때에는 입찰 수량, 응찰 수량, 낙찰 수량 및 낙찰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낙찰금액의 납입과 배출권의 이전) ① 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일 당일에 이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 대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운영규정에 따르며, 배출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3장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제11조(추가할당 대상 및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하여 예비분을 유상으로 추가할당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은 이 규정에 따른 경매의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추가할당 목적에 맞추어 대상 자격, 방식, 업체별 신청수량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자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하여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공적금융기관 또는 거래소를 통해 경매 이외의 방식으로 예비분을 추가할당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추가할당일 3거래일전까지 대상 자격, 일시, 할당예정 물량, 방식 등을 포함한 추가할당 계획을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제12조(추가할당 절차 등) ①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추가할당 대상인 할당대상업체는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희망하는 배출권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하여 신청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거래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신청 결과를 보고받은 후 배출권 공급 가격 및 수량을 확정한다.

③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가할당 하는 경우, 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교부는 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일자에 하며, 배출권을 추가할당 받고자 하는 자는 취득가격에 취득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거래소의 수수료 및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추가할당 이전에 결제계좌(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수수료 등)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유상할당과 제11조에 따른 추가할당을 시행할 때에는 거래소의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배출권의 유상 할당,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71호, 2018. 5.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0호, 2019. 3. 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08호, 2020. 5.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